

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시행 관련 안내

1. 관련 :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-1611 (2015.6.24., 「청탁금지법」 홍보 리플렛 배포 및 활용 협조)
2. 위 관련, 국민권익위에서 2016.9.28.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(이하 「청탁금지법」) 시행에 대비, 각 공공기관에서 주요내용을 확인·활용하도록 붙임과 같이 리플렛을 배포하여 이를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(붙임1 자료 참조)

<청탁금지법 주요내용>

부정청탁 금지	금품등 수수금지	위반행위 신고 및 보호·보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-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- 부정청탁시 부정청탁 관련자 제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금지 (* 공직자등의 배우자 포함) - 금품등 수수시 관련자 제재 - 기준금액 초과 외부강의 사예금 제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공기관(또는 감독기관), 감사원·수사기관,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- 신변보호등 신고자 보호장치 마련 -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·포상금 지급

<참고1> 부정청탁의 행위유형 (법 제5조①)

- ‘채용·승진 등 인사에 개입’, ‘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’, ‘입찰·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’ 등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15개로 구체화
- * ‘공무수행 사인(私人)’ 도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이 법 일부(제5조~제9조) 준용 (법 제11조등)

<참고2> 기준금액 초과 외부강의 사례금 (법 제10조, 제23조④, 부칙 제3조, 붙임1 리플렛 내용등)

- 외부강의 등 : 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·강연·기고 등
- 기준금액 :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함 (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는 ‘금품등 수수’ 에 해당,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)
- 적용례 : 이 법 시행 (2016.9.28.)후 하는 외부강의등 부터 적용 (부칙 제3조)

<참고3> 위반행위 신고·처리 (법 제9조, 제20조, 제21조, 붙임1 리플렛 내용등)

- 공직자등 :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, 거둬드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
- 소속기관장 :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, 위반공직자 징계처분, 부정청탁의 주요내용·조치사항 기록관리 등 [각 공공기관에 ‘부정청탁 금지담당관’ (가칭) 지정]
- *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의무화 (징계와 함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사례 가능)

※ 위 안내자료외에 최근 국민권익위가 대전 등 지역에서 실시한 「청탁금지법」 설명회 자료의 “「청탁금지법」 주요내용”과 함께 「청탁금지법」 전문을 첨부하오니 보완하여 참고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(붙임2., 붙임3 자료 참조 / 시행령이 제정되면 권익위에서 세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 예정)

- 붙임 : 1. 「청탁금지법」 홍보 리플렛 배포 및 활용협조 공문 (국민권익위) 1부.
 2. 「청탁금지법」 주요내용 1부.
 3. 「청탁금지법」 전문 1부. 끝.